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9. 23.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9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5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98. 9.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홍 기

가. 개정이유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구본청, 보건소 및 동의 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구 본청 행정기구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8조)
 -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밑에 둠 (안 제3조)
 -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보건소의 설치와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 및 보건소의 직제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2조)
- 동의 직무와 동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내지 제15조)

3. 전문위원 겸임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10조와 '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본청의 행정기구를 1실 5국 3담당관 24과에서 5국 1담당관 22과로 기획실을 폐지하고 과를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임.
- 동조례안은 본칙을 4장 15조로 배열하고 부칙을 4조 32항으로 배열하였으며 본칙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등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구본청의 국·담당관의 설치규정과 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보건소, 제4장에는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부칙에는 동조례안이 개정되므로써 폐지되는 조례와 일부 내용이 개정되는 조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동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의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는 구본청에 종전의 기획실은 폐지하고 총무국을 행정관리국, 재무국을 기획재정국, 시민국을 생활복지국,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음.

-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의 하부조직인 과를 설치하고, 소관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보건소 설치와 직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구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 및 동의 관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행정기구개편과 정원감축 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동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기구개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조직진단과 공청회등을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 국가시책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기구개편시에는 전문기관의 조직진단등의 결과를 토대로 국은 물론 국의 하부조직인 과의 기능과 업무량등을 정밀히 분석한 후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1998. 9.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구본청, 보건소 및 동의 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 본청 행정기구설치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3조 내지 제8조)

-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밑에 둠 (안 제3조)
-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4조)
-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5조)
-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6조)
-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7조)
-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두는 내용과 국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8조)

나. 보건소의 설치와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 및 보건소의 직제등에 관하여 규정 함 (안 제9조 내지 제12조)

다. 동(洞)의 직무와 동장 등에 관하여 규정 함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1995.12.29. 법률 제5069호)제101조 내지 제110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8. 8.31대통령령 제15875호)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 필요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1조내지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10조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의 직급 등)구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보건소의 담당관·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등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 청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마포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②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4. 의식·회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동행정에 관한 사항
7. 공보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0.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유기장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16.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17.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18.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9.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20.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21.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병사에 관한 사항
23.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 교육 및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27. 도시방재종합대책계획수립 및 총괄조정
28.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9. 재난관리 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0.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투자 심사 및 재정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기업의 예산·결산의 승인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법제심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6.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9. 지출 및 세입·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회계검사·공채·직원저축에 관한 사항
11. 구세입 및 현계 총괄
12. 자동차세·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건설기계취득세·건설기계등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4. 세외수입총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5. 구세 및 수수료 관련법규·조례·규칙등의 관리 및 제·개정등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취득세 및 부동산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농지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17. 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도축세·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9. 주민세·사업소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0.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등에 관한 사항
2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2. 지적 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23. 토지 이용정리에 관한 사항
24.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25.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26.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7.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제6조(생활복지국) 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산업위생과·환경과 및 청소 행정과를 둔다.

②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
4.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유아교육·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6.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7. 소관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9. 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시장의 지도·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물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사항
13. 농업·수산업 및 축산업에 관한 사항
14.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는 제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공중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7.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9.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20.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1.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분뇨 및 정화조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24.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25. 연료(가스류 포함)판매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7.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8.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30.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2.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33. 공중변소의 설치·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청소 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5.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재건축 및 조합주택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영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7. 주택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8. 주택 재개발사업지구내 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개발제한 구역은 제외)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3. 건축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15.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6. 공원·녹지 관리의 총괄
17.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8.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19.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20.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21. 생활체육·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집행
7.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9.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0.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11.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
12.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3.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14.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5. 분류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
16.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7.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1. 방치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24.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25.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 지도등에 관한 사항
26.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7.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

제9조(설치)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둔다.

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직제등)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동

제1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동장) ①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동장의 직급과 동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할구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실·국·담당관·과의 폐지 및 변경으로 국 또는 담당관·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의안계장”을 “의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실장”을 “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령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25조 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위임사무의 주관국관 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법제계장이”를 “기획예산과 법무업무담당주사가”로 “기획예산담당관 법제계”를

“기획예산과 법무업무”로 하고, 제7조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마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민원조사계장”을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공보계장”을 “공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중 “동정계장”을 “동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의 책임하에 관수 한다.

⑫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시민국장”을 “행정관리국장·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마포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무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마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토지조사계장으로”를 “토지조사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보험연금계장으로”를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기획실장,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으로”를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로 하며, 제12조제2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청소년계장이”를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계장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별지제3호서식중 “위생과”를 “산업위생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담당계장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하고, 제6조제2항중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을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산업위생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과 상공계장이”를 “산업위생과 상공업무 담당주사가”로, “산업과”를 “산업위생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민보건위원회”를 “시민도시위원회”로, “생활체육과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산업위생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업무담당계장이”를 “상공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업무담당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활용제장으로”를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업무주관계장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동항제2호의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중 “교통시설계장이”를 “교통시설업무 담당주사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6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수계장”을 “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총무국장”을 “행정관리
국장”으로 한다.